#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민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772 발의연월일: 2024. 9. 6.

발 의 자: 강민국 • 권성동 • 이종욱

김태호 · 윤한홍 · 박성민

이헌승 • 박덕흠 • 조승환

김종양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(Financial Action Task Force, 이하 "FATF"라 한다)는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국제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, 대한민국은 FATF 4차 상호평가에서 「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의 금융거래등 제한범위를 국제기준에 맞춰 확대할 것을 개선과제로 지적받음.

따라서, FATF 권고사항을 이행하여 국내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및 국가 신인도 상승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FATF에서 권고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금융거래등제한대 상자의 금융거래등 제한범위를 직접 소유하는 자금·재산에서 금융거 래등제한대상자가 직·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는 법인의 자금· 재산으로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(안 제4조제4항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#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"단체를"을 "단체 및 그 개인·법인 또는 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는 법인을"으로 한다.

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고시된 자가"를 "고시된 자(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아닌 자로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는 법인을 포함한다. 이 항과 제5조제1항에서 같다)가"로 하고, 같은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"를 "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.

⑨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소유 또는 통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조제2항제3호 중 "지정되었다는"을 "지정되었다는 사실 및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는 법인이라는"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혂 행 제4조(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 정 등)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개인・ 법인 또는 단체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 (이하 "대량살상무기확산등"이 라 한다)과 관련되어 있는 것 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그 개인 ·법인 또는 단체를 제4항제1 호 및 제2호의 행위가 제한되 는 자(이하 "금융거래등제한대 상자"라 한다)로 지정하여 고 시할 수 있다.

### ②・③ (생략)

④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(제2호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

용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허가신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 거래등제한대상자 또는 그 행위의 상대방이 할 수 있다.

1.·2. (생략) ⑤ ~ ⑧ (생략) <u><신 설></u>

### 제6조(벌칙) ① (생 략)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1. · 2. (생략)
- 3.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거 대등제한대상자로 <u>지정되었다</u> 는 사실을 알면서 같은 조 제 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

한다. 이 항과 제5조제1항에서
같다)가
<u>그 &amp;</u>
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
고시된 자
1.・2. (현행과 같음)
⑤ ~ ⑧ (현행과 같음)
⑨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된
소유 또는 통제의 기준은 대통
령령으로 정한다.
세6조(벌칙) ① (현행과 같음)
②
1.・2. (현행과 같음)
3
<u>지정되었</u>
다는 사실 및 금융거래등제한대
상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
소유 또는 통제하는 법인이라는

는 행위를 한 금융거래등제한 대상자의 상대방

4. • 5. (생략)

③ ~ ⑦ (생 략)

\_\_\_\_\_

-----

4. • 5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⑦ (현행과 같음)